

#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02호
-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3년 5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 2. 제안이유

-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등 증가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등의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

나. 운용규모 : 2,875,087백만원(당초계획 대비 1,054,364백만원 증가)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합 계	1,820,723	2,875,087	1,054,364
기 타 회 계 전 입 금	-	1,062,488	1,062,488
이 자 수 입	86,548	61,835	△24,713
예 치 금 회 수	1,734,175	1,750,764	16,589

#### < 지출계획 >

(단위:백만원,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증 감 율 (D=C/A)
합 계	1,820,723	2,875,087	1,054,364	57.9
효 율 적 재 정 운 영	-	155,000	155,000	-
공사·공단 상환 지원	-	155,000	155,000	-
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	-	155,000	155,000	-
출 자 금	-	155,000	155,000	-
재 무 활 동	1,820,513	2,719,877	899,364	49.4
내 부 거 래 지 출	160,000	160,000	-	-
보 전 지 출	1,660,513	2,559,877	899,364	54.2
여 유 자 금 예 치	196,923	1,096,287	899,364	456.7
예 치 금	196,923	1,096,287	899,364	456.7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1,419,042	1,419,042	-	-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44,548	44,548	-	-
행 정 운 영 경 비	210	210	-	-

○ 수입계획 변경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 전입금 1,062,488백만원 증가
  - ▶ 전입금 : (당초) 0원 → (변경) 1,062,488백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2,548억원) 중 법정 의무경비(1조 3,298억원)를 공제한 잔액(1조 9,250억원)의 55.2% 적립
-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24,713백만원 감소
  - ▶ 이자수입 : (당초) 86,548백만원 → (변경) 61,835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6개월물)가 2022. 12월 4.74%에서 2023. 5월 3.79%로 0.95%p 하락 등을 반영함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6,589백만원 증가
  - ▶ 예치금회수 : (당초) 1,734,175백만원 → (변경) 1,750,764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이 당초 대비 155,000백만원 증가
  - ▶ 출자금 : (당초) 0백만원 → (변경) 155,00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예치금이 당초 대비 899,364백만원 증가
  - ▶ 예치금 : (당초) 196,923백만원 → (변경) 1,096,287백만원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변경안의 개요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등의 증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등의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됨.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여유재원과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6조<sup>1)</sup>에 따라 202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종전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승계·통합됨.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

구분	조성재원	기금용도
통합계정 (중전 재정투융자기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예탁금 원금·이자수입 등	- 다른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이자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중전 감채기금)	-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방채 원리금 상환 - 다른 회계로의 전출

-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8,613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772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됨.

< 2023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계획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238,575	86,548	1,463,800	△1,377,252	861,323

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지출 운용 규모가 당초 1조 8,207억 2천 3백만원에서 1조 543억 6천 4백만원(57.9%) 증가한 2조 8,750억 8천 7백만원으로 변경됨.

##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820,723	2,875,087	1,054,364	계	1,820,723	2,875,087	1,054,364	
전입금	-	1,062,488	1,062,488	효율적 재 운영	소 계	-	155,000	155,000
					출자금	-	155,000	155,000
이자수입	86,548	61,835	△24,713	재 활 무 동	소 계	1,820,513	2,719,877	899,364 (증 49.4%)
					기타회계 전출금	160,000	160,000	-
					차입금 원금상환	1,419,042	1,419,042	-
					차입금 이자상환	44,548	44,548	-
예치 금수	1,734,175	1,750,764	16,589		예치금	196,923	1,096,287	899,364 (증 456.7%)
				행운 경비	소 계	210	210	-
					기본경비	210	210	-

### (1) 수입계획의 변경

- 전입금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 2,548억원 중 법정 의무경비(1조 3,298억원)를 제외한 1조 624억 8천 8백만원(55.2%)이 적립되면서 순증함.

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인하<sup>3)</sup> 등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171억 4천 1백만원)과 통합계정 예탁 이자수입(△75억 7천 2백만원)이 247억 1천 3백만원 감소함.
-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65억 8천 9백만원 증가함.

## (2) 지출계획의 변경

- 출자금은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서울 교통공사의 공사채 상환에 1,550억원을 신규 편성함.
-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에 따른 수입·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해 8,993억 6천 4백만원의 여유자금이 증가함(1,969억 2천 3백만원 → 1조 962억 8천 7백만원).
- 그 외 기타회계 전출금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본경비는 당초 계획과 동일함.

##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 ‘지방기금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액의 20%를 초과

---

3)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6개월물)가 2022. 12월 4.74%에서 2023. 5월 3.79%로 0.95%p 하락 등을 반영

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지출 운용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과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 보다 1조 543억 6천 4백만원(57.9%)을 증액하게 됨.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1,550억원이  
순증하고, 재무활동(예치금)이 49.4%(8,993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됨.

-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지출계획 중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하철 요금 동결과 운송원가(2,003원)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무임승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임.

-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 평균 7,69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이후 3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2023년 예상 부족자금이 1조 7천억원, 부채는 4조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 따라서 이번 출자금 지원 규모로는 당면한 만성적인 경영적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공사의 강도 높은 경영 개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시민의 대표적 공공재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재정안정화계정의 대규모 재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바,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재분배, 서울시와 공기업의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	연락처
김성만 전문위원	2180-8054